

『구미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5년 5월 21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5년 5월 26일

라. 상정일자 : 2015년 6월 3일

제19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정책기획실장 황 필 섭

나. 제안이유

「지방재정법」 개정에 따라 녹색생활 및 신·재생에너지 이용 촉진
을 위한 보조금 지원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「지방재정법」의 개정에 따라 보조금 지출근거를 직접 규정함.
 - 안 제17조에 녹색생활 실천 및 신·재생에너지 설치 보조금 지원 근거 제시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규제개혁T/F팀, 청렴정책팀과 합의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백 인 업

○ 본 조례안은

「지방재정법」(‘14.11.29. 시행) 및 「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(‘15.4.29. 공포, 시행) 개정에 따라 시가 권장하는 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따른 관련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안 제17조의 제목 “(녹색경제·녹색산업에 대한 지원·특례 등)”을 “(녹색경제·녹색산업·녹색생활에 대한 지원·특례 등)”으로 수정하고,
- 같은 조 제3항 중 “녹색기술·녹색산업”을 “다음 각 호의 사업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부터 3호까지를 신설하여 보조금 지출근거를 명확히 하였음.
 1.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기술·녹색산업 육성사업
 2. 단독·공동주택, 마을공동시설의 신·재생에너지 이용·보급사업
 3. 시민의 녹색생활 실천·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업

○ 검토결과

▪ 본 조례안은

「지방재정법」(‘14.11.29. 시행) 및 「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(‘15.4.29. 공포, 시행) 개정에 따라 보조금의 지출근거를 명확히 하여 시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